

해 양 수 산 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남해군

관 련 자 남해군 ○○○○과 지방○○주사보(전 지방○○서기) ○○○
남해군 ○○○○과 지방○○주사보(전 지방○○서기)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4. 1. 13.부터 2015. 8. 2.까지, 2016. 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5. 8. 3.부터 2016. 1. 31.까지 남해군 ○○○○과에 근무하면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인 사무장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체험마을과 사무장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 사무장에게 어촌체험마을에서 매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누계 26명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안내 지도, 홍보·마케팅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사무장 급여 지급 부적정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지급은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급여 지급방법은 시·군에서 어촌체험마을의 협약서 및 채용상황,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되, 마지막 분기(월)은 집행확인 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인터넷 뱅킹 활용)하여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사업연도 마지막 달인 12월분 사무장 급여 지급확인 등 정산하여 마지막 분기(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 급여의 매월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매 분기(월) 어촌체험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해군은 사무장 급여 지급에 대한 정산확인 없이 사업연도 마지막 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마을 등 7개 어촌체험마을에서는 ○○○ 등에게 대해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사무장 퇴직급여 충당 및 4대보험 보험료 납입 관리·감독 소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조건으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보험료 납입은 어촌체험마을에서 부담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사무장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도 어촌체험마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을부담으로 적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어촌체험마을

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해군은 4대보험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촌체험마을 부담으로 적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장 급여, 퇴직연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행지침을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